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 2.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박승직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설명자: 박승직 의원
-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O 다문화주민이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문화와 안전교육 확산 유도 및 시

설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O 다문화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 을 도모함.

다. 주요내용

- O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 방 안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O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7조)
- O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남기호)

가. 조례제정 목적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주민, 다문화 전문의용 소방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은 적절함.
- O 안 제3조는 도내 거주하는 다문화주민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문화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방 안전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 교육 실시, 다국어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배포, 다문화주민을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확대, 안전체험시설 등의 체험 교육,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배포 등의 지원사업실시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한 것은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기 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활하고 효 율적인 지원사업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 전 예방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전담부서를 통해 면 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 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문화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지원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정책이 되 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시·도별 조례 현황

소방본부

시ㆍ도	조례명	제ㆍ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0. 11.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